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·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7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21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. ~) 실시 예정

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

제1조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, 제7호,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조(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3조(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7조 제1호, 제7호, 제8호, 제14호, 제17호, 제18호, 제20호, 제23호, 제24호, 제26호, 제27의2호 및 제28호부터 제30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(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7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6호,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2호 중 “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·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·기간”을 “제9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·시기”로 한다.

제6조(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7조(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, 제14호,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(「수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제23조의2제1항·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 신고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조(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의2호 및 제5의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(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, 제2호,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(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에너지이용합리화법
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
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
전까지를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조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12조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
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
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,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(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
칙」의 개정)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
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.

제14조(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의
개정) 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
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
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15조(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 제1호,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(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17조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, 제5호, 제9호,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8조(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제13조의7 및 별표 5의3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9조(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환경개선비용 부담

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(「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21조(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1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51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: 2014년 1월 1일</u>	6. <u><삭 제></u>
7. <u>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: 2014년 1월 1일</u>	7. <u><삭 제></u>
8. (생략)	8. (현행과 같음)
9. <u>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: 2014년 1월 1일</u>	9. <u><삭 제></u>
10. (생략)	10. (현행과 같음)
11. <u>제37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자의 자격: 2014년 1월 1일</u>	11. <u><삭 제></u>
12. (생략)	12. (현행과 같음)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32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</u> ----- ----- 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등</u>	3. <u><삭 제></u>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(규제의 재검토) (생략)	제37조(규제의 재검토)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21조 및 별표 3에 따른 이 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: 2020년 1월 1일</u>	4. <u><삭 제></u>
5. <u>제26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 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: 2020년 1월 1일</u>	5. <u><삭 제></u>
6. <u>제27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 장치의 부착 등 조치 및 부착증 명서 등의 제출: 2020년 1월 1일</u>	6. <u><삭 제></u>
7. <u>제30조에 따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: 2020년 1월 1일</u>	7. <u><삭 제></u>
8. (생략)	8. (현행과 같음)
9. <u>제32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 의 인증·변경인증 시 제출서 류: 2020년 1월</u>	9. <u><삭 제></u>
10. <u>제34조에 따른 출입·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: 2020년 1 월 1일</u>	10. <u><삭 제></u>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7조(규제의 재검토) ① (생략)	제137조(규제의 재검토) ① (현행과 같음)
1.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시설: 2014년 1월 1일	1. <삭제>
2. ~ 6. (생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제39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기한: 2014년 1월 1일	7. <삭제>
8. 제4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: 2014년 1월 1일	8. <삭제>
9. ~ 13. (생략)	9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제57조 및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: 2014년 1월 1일	14. <삭제>
15. ~ 16. (생략)	15. ~ 16. (현행과 같음)
17. 제62조 및 별표 17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: 2014년 1월 1일	17. <삭제>
18. 제63조 및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: 2014년 1월 1일	18. <삭제>
19. (생략)	19. (현행과 같음)

20. 제6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 증의 대상: 2014년 1월 1일

21. ~ 22. (생략)

23. 제71조의2제1항 및 별표 19의2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: 2014년 1월 1일

24.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결함확인검사 자동차의 선정 방법: 2014년 1월 1일

25. (생략)

26. 제76조 및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: 2014년 1월 1일

27. (생략)

27의2. 제77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의 보고내용: 2017년 1월 1일

27의3. ~ 27의4. (생략)

28. 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: 2014년 1월 1일

29. 제82조의7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함 시정 또는 재검사 신청 여부에 대한

20. <삭제>

21. ~ 22. (현행과 같음)

23. <삭제>

24. <삭제>

25. (현행과 같음)

26. <삭제>

27. (현행과 같음)

27의2. <삭제>

27의3. ~ 27의4. (현행과 같음)

28. <삭제>

29. <삭제>

<u>통지 기간 · 방법 및 결함시정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: 2014년 1월 1일</u> 30. <u>제87조제1항 · 제2항 · 제4항, 별표 22, 별표 23 및 별표 23의2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, 방법 및 기준 등: 2014년 1월 1일</u> 31. ~ 32. (생략)	30. <u><삭 제></u> 31. ~ 32. (현행과 같음)
--	---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7조의2(규제의 재검토) (생략)	제107조의2(규제의 재검토) (현행과 같음)
1. <u>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·방법 등: 2014년 1월 1일</u>	1. <u><삭 제></u>
2. <u>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: 2014년 1월 1일</u>	2. <u><삭 제></u>
3. <u>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·관리기준: 2023년 1월 1일</u>	3. <u><삭 제></u>
4. ~ 5. (생략)	4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제54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: 2014년 1월 1일</u>	6. <u><삭 제></u>
7. (생략)	7. (현행과 같음)
8. <u>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·관리 신고·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·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: 2014년 1월 1일</u>	8. <u><삭 제></u>
9. ~ 10. (생략)	9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<u>제90조제1항·제2항·제6항</u>	11. <u><삭 제></u>

<u>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,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: 2014년 1월 1일</u> 12. <u>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·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·기간: 2014년 1월 1일</u> 13. (생략)	12. <u>제9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·시기: 2014년 1월 1일</u> 13. (현행과 같음)
--	---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5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</u> <u>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</u> <u>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</u> <u>의 수입등의 허가대상 및 허가</u> <u>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</u> <u>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</u> <u>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</u> <u>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</u> <u>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</u> <u>여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6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76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3의 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: 2014년 1월 1일</u>	8. <u><삭 제></u>
9. <u>제3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검사·인증시험의 인력 및 장비: 2014년 1월 1일</u>	9. <u><삭 제></u>
10. <u>제42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 점검의 면제대상: 2014년 1월 1일</u>	10. <u><삭 제></u>
11. <u>제43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: 2014년 1월 1일</u>	11. <u><삭 제></u>

12. <u>제44조,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·기준 및 대상 항목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: 2014년 1월 1일</u> 13. (생략) 14. <u>제5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신청 시 제출서류: 2014년 1월 1일</u> 15. <u>제54조 및 별표 18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: 2014년 1월 1일</u> 16. (생략) 17. <u>제73조 및 별표 2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: 2014년 1월 1일</u>	12. <u><삭제></u> 13. (현행과 같음) 14. <u><삭제></u> 15. <u><삭제></u> 16. (현행과 같음) 17. <u><삭제></u>
---	---

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<u>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32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<u>제23조의2제1항 · 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 ·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</u> ----- ----- -.
1. <u>제23조의2제1항 · 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 ·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: 2014년 1월 1일</u>	1. <u><삭 제></u>
2. <u>제31조 및 별표 8에 따른 기술진단 대행 기관의 장비와 기술인력: 2014년 1월 1일</u>	2. <u><삭 제></u>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<u>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1. ~ 4. (생략) 4의2. <u>제7조의4 및 별표 4의3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관리·운영 권고 기준: 2020년 1월 1일</u> 5. (생략) 5의2. <u>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: 2019년 1월 1일</u> 6. ~ 7. (생략)	제15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<u>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</u>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<u><삭 제></u> 5. (현행과 같음) 5의2. <u><삭 제></u> 6. ~ 7. (현행과 같음)

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의2(규제의 재검토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21조의2(규제의 재검토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1. <u>제5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: 2014년 1월 1일</u>	1. <u><삭 제></u>
2. <u>제9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: 2014년 1월 1일</u>	2. <u><삭 제></u>
3. ~ 4. (생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제16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대상 및 변경보고 시 제출서류: 2014년 1월 1일</u>	5. <u><삭 제></u>
6. ~ 7. (생략)	6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: 2014년 1월 1일</u>	8. <u><삭 제></u>
9. (생략)	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(규제의 재검토)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35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----- ----- -----.
1. 제28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의 범위: 2014년 1월 1일	1. <삭 제>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28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8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·재료·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·재활용 방법: 2014년 1월 1일</u>	4. <삭제>
5. ~ 6의2. (생략)	5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7. <u>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과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7의 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기준: 2014년 1월 1일</u>	7. <삭제>
8. <u>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: 2014년 1월 1일</u>	8. <삭제>
9. (생략)	9. (현행과 같음)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(규제의 재검토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 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: 20 14년 1월 1일 5.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 의 기록·보존 서식: 2014년 1월 1일	제20조(규제의 재검토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삭제> 5. <삭제>

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12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1. <u>제3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: 2014년 1월 1일</u>	1. <u><삭 제></u>
2. ~ 3. (생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

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(규제의 재검토) (생 략) 1. <u>제10조에 따른 지하수개발 ·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</u> 2. <u>제1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 · 이용의 신고 등</u> 3. ~ 3의2. (생 략) 4. <u>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</u>	제55조(규제의 재검토) (현행과 같 음) 1. <u><삭 제></u> 2. <u><삭 제></u> 3. ~ 3의2. (현행과 같음) 4. <u><삭 제></u>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규제의 재검토) (생략) 1. <u>제8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: 2014년 1월 1일</u> 2. ~ 6. (생략)	제37조(규제의 재검토) (현행과 같음) 1. <삭 제> 2. ~ 6. (현행과 같음)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4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(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)을 기준으로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</u> 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84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</u>	4. <u><삭 제></u>
5. <u>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·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</u>	5. <u><삭 제></u>
6. ~ 8. (생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</u>	9. <u><삭 제></u>
10. (생략)	10. (현행과 같음)
11. <u>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</u>	11. <u><삭 제></u>

<u>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</u> 12. <u>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</u> <u>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</u> <u>준</u> 13. ~ 14. (생 략)	12. <u><삭 제></u> 13. ~ 14. (현행과 같음)
---	--

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77조(규제의 재검토) 기 후에 너	지 환경부장관은 <u>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77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	-----	<u>제13조의7 및 별표 5의3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</u> -----
1. <u>제13조의7 및 별표 5의3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: 2017년 1월 1일</u>		1. <삭 제>		
2. <u>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: 2017년 1월 1일</u>		2. <삭 제>		
3. <u>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 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: 2017년 1월 1일</u>		3. <삭 제>		
4. <u>제42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: 2017년 1월 1일</u>		4. <삭 제>		
5. <u>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·</u>		5. <삭 제>		

<u>변경등록 및 변경신고: 2017년 1</u> <u>월 1일</u>	
--	--
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9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</u> <u>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</u> <u>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</u> <u>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</u> <u>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</u> <u>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</u> <u>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</u> <u>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일을 기준으로 <u>3년마다(매 3년</u> <u>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</u> <u>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.	제7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마다(매 3년</u> <u>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</u> <u>말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생 략)
3. <u>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</u> <u>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</u> <u>·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: 2014</u> <u>년 1월 1일</u>	3. <삭 제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
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31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1. <u>제5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·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: 2014년 1월 1일</u>	1. <u><삭 제>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도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기한: 2014년 1월 1일</u>	3. <u><삭 제></u>
4. ~ 7. (생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1 - 6394